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49

발의연월일: 2023. 2. 28.

발 의 자:정우택・박성민・조명희

정희용 · 조은희 · 태영호

박대수 • 구자근 • 서일준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상근직원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하여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2019헌가11).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

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음(2017헌가4). 이에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금권선거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출구조사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관의 출구조사에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를 "사람"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후 보자와 그 배우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로,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 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 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를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하는 소품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에서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어깨 띠의 규격 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 액,"으로, "정한다"를 "정하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금액

범위는 각 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한다"로 한다.

-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이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범위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손쉽게 제작하거나 구입한 어깨띠・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자신의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방법
- 2.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법인·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화물 운송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붙이 는 방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을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단서 중 "제79조에"를 "제68조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제79조에"로 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위하여 선거日에 投票所로부터"를 "위하여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로, "投票마감

시각까지"를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투표소"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 "투표마감 시각 전에"를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를 벗어나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등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 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자) ①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u>-</u>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	
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	5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에 해	
당하는 者(제5호 및 제6호의	<u>사람</u>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	
<u>한다)</u>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u><신</u>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u>① 제60</u>
<u>설></u>	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
	지된 자 이외에 누구든지 선거
	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 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u>회계책</u> 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

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에서 본인의 부담으 로 손쉽게 제작하거나 구입한 어깨띠・윗옷(上衣) • 표찰(標 札)・수기(手旗)・마스코트, ユ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자신의 몸에 붙이거나 입거 나 지니는 방법 2.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법인·단체 가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여객・화물 운송 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붙 이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와 그 배우자-----

-----회계책임자가 선거운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 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 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니 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 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 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 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

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동기간 중 사용하는 소품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에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서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 당을 말한다)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할 수 있다.

< 삭 제 >

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정하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금액범 위는 각 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 한다.

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公務 | 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

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 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 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 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 •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 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 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 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 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 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 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 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7. (생략)
- ② ~ ⑦ (생 략)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제 사용제한) ①·② (생 략)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u> 상근 임원</u>
<u>.</u>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② (현행과 같
<u>♥</u>)
③

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 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 ① (생략)
 - ② 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이나 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누구든지 選擧 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陳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放送局·라디오放送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選擧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選擧日에 投票所로부터 50미터 밖에서 投票의 秘密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만, 제68조에 따라 자동차를 사
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제79조에
④ (현행과 같음)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 ① (현
행과 같음)
②
위하여 사전투표기간에 사전
투표소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
<u>로부터</u>

아니하며 이 경우 <u>投票마감시</u> <u>각까지</u>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 할 수 없다.

③ (생략)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저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 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다음 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1	(섀	량)

선거일의 투표마감시
<u> 각까지</u>
③ (현행과 같음)
세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u>전에</u>
② (현행과 같음)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1. ~ 4. (현행과 같음)

- 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 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 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 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 동을 한 사람
- 6. ~ 20. (생략)
- ② ~ ⑤ (생 략)
-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 5.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를 벗어 나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등 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6. ~ 20.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